

2024 미취업청년 취업 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직업 선택 기회 확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충북 11개시군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미취업 상태인 19 ~ 39세 청년 (충북 거주)
 - 지원규모 : 미취업 청년 100명 (2개월분)
 - 지원내용
 - 일경험(인턴/수습직) 청년인건비 월 최대 206만원 지원(2개월)
(사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별도 부대비용 등 제외)
 - 지원절차
 - 모집기간 내 접수된 서류 평가 후 고득점순 1.5배수 기업 선발
 - 선정기업의 채용 청년 대상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 평가표 기준 최저점수 50점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2. 신청대상 및 요건

기업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중소기업**
- 기업당 승인인원 : 2명
- 단, 보건업 등 특수업종 종사 일경험 청년 승인인원은 심사 후 결정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청년근로자

* 모든 요건 공고시작일 기준('24.7.11.)

①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는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

❖ **청년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② 기업선정 및 채용공고 게시 이후 채용된 청년

(계약직/정규직 모두 가능)

③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이력이 없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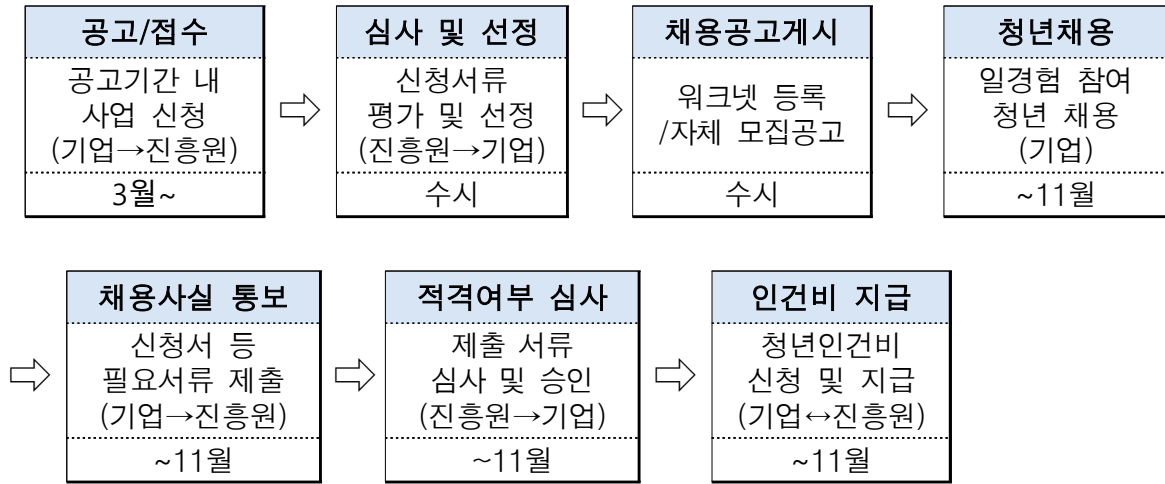
④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 ~ 39세 청년

제외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참여인원 선정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완료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채용 1개월 이내 청년 채용확인서류 제출 필수
-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 시,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채용공고와 상이한 경우(채용직무, 시기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참여 사업장 불특정 점검 실시(청년의 재직 확인)
- 잔여 예산 30% 미만 시, 참여기업에 사전 안내할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7. 11.(목)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관련 서류 구비하여 cba9783@naver.com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참여청년이 향후 타 재정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안내하여야 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지원팀(☎043-270-0262) 문의

별첨

일경험 참여기업 정량 심사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선정기준		평가 방법	배점	평가 배 점					득점
급여 (30점)	급여 수준	- 신입 기준 연봉 (중빙) 채용공고 상 기재된 연봉 기준	30	4,000만원 이상	3,600만원 ~ 4,000만원 미만	3,200만원~ 3,600만원 미만	2,800만원~ 3,200만원 미만	2,800만원 미만	
				30	27	24	21	18	
고용 안정성 (50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빙)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월)	20	200명 이상	150명~ 199명 이하	100명~ 149명 이하	50명~ 99명 이하	49명 이하	
				20	18	16	14	12	
	청년 고용 비율	- 청년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중빙) 사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월)	20	60% 이상	45%~ 60%미만	30%~ 45%미만	15%~ 30%미만	15% 미만	
				20	18	16	14	12	
매출 증가율	- '22년 대비 '23년 매출증가율 *신생기업은 중간 점수 배점 (중빙) 22년 재무제표 23년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0	30% 이상	20%~ 30%미만	10%~ 20%미만	5%~ 10%미만	5% 미만		
			10	8	6	4	2		
복지 후생 (20점)	복지 후생	- 복리후생 관련 사내 제도 1) 가족사(사택) 2) 통근버스 3)건강검진 4) 보육시설 5) 자녀학자금 6)단체보험	20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20	18	16	14	12	
가산점		- 정주여건 관련 제도 (최대 5점 가산)	+5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 (사업당1점)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③ 청년친화강소기업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⑥ 클린사업장 ⑦ 성과공유기업 인증서 ⑧ 기타 총칭북도 인증 또는 표창 ※ 시군인증 및 특허는 인정안됨					
합 계									

* 종합평가 50점 미만 시 실격처리